

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

2019년 8월 20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
법무부장관

박 상 기

●법률 제16445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제2호 중 “제7조제2항”을 “제7조제2항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공직사회,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,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·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